

■ 미국식 ESOP 도입 논의 검토와 시사점 ■

□ 미국의 ESOP(Employment Stock Ownership Plans) 개요

-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이 정의하는 종업원 급부제도에 속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다양한 유형의 기업연금제도와는 보완 관계에 있음
- 차입형(leveraged) ESOP와 非차입형(non-leveraged) ESOP, 그리고 차입가능형 ESOP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중 차입형 ESOP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개선 방안 논의 현황

- (논의 방향)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보완, 우리사주제도의 포괄적 개선, 우리사주조합과 ESOP의 혼합, ESOP 제도의 도입·대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핵심 논쟁) 제도 도입의 주 목적은 ‘경영 참여’와 ‘복지 증진’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문제임
- 또한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와 별도로 도입하느냐 확정출연형 기업연금의 일부로 도입하느냐의 여부

□ 시사점

- (입장 대립) 정부와 경영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주안을 둔 방향으로 고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경영 참가를 명확히 제도 내에 마련할 것을 주장
- (노사정위원회 합의 토대) 종업원지주제의 도입 이유 및 효과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정위 합의하에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긍정적 효과 및 결점 분석 병행) 생산성 향상, 노사간 협력 증진 등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 모색은 물론 제도 도입 상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미국식 ESOP 도입 논의 검토와 시사점

논의 현황

- IMF 체제 이후 우리사주제(한국형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의무보유기간 단축 등의 일부 법령을 개정
- 한편 재경부는 우리사주제를 미국식 ESOP¹⁾를 원용한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노동계는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 이에 정부와 한국노총의 합의(99. 6. 25)에서 'ESOP 제도의 도입시 노사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명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약속함
 - 한편 최근 재경부가 미국식 ESOP 도입 검토 및 시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룸

미국의 ESOP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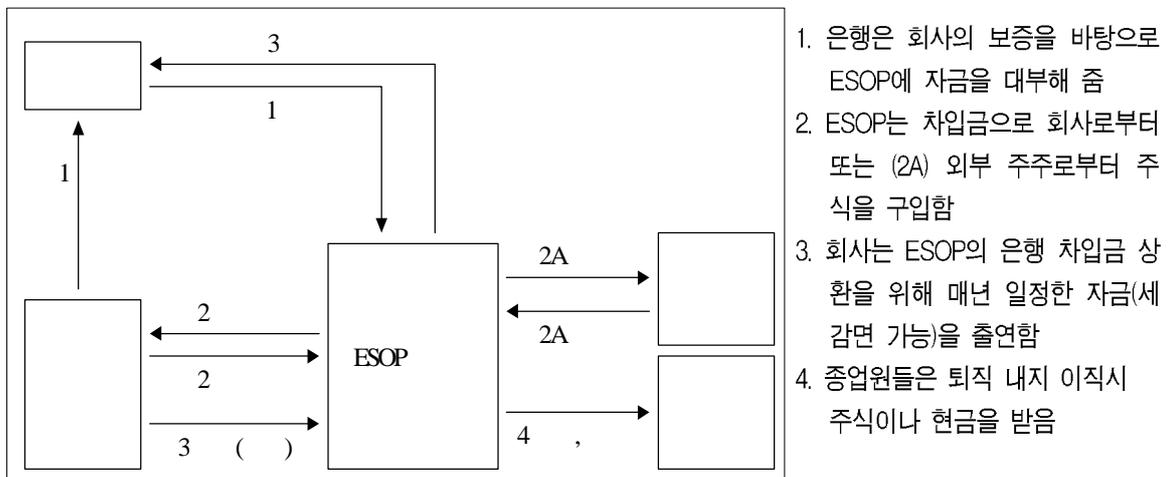
- (개요)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정의하는 종업원 급부제도에 속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로서 ESOP가 법규정으로 도입, 운영됨
 - ESOP 자체가 기업연금제도는 아니며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기업연금제도의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임
 - 따라서 기존의 연금을 ESOP에 전환하는 것은 불법임
- (종류) 미국의 ESOP는 'ERISA형 ESOP'와 '세감면 ESOP²⁾'가 있음

1) ESOP는 미국과 영국의 종업원지주제도를 지칭하는 용어의 약칭, 특히 미국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ment Stock Ownership Plans)를 뜻함과 동시에 종업원지주제를 포괄하는 일반적 대표 용어로 사용됨

2) 1975년 제정된 세금감면법에 의하여 ERISA와 별도로 운용되기 시작한 TRASOP(Tax Reduction Act ESOP)는 1983년부터 PAYSOP(payroll-based ESOP)로 대체되었으며, PAYSOP에 대한 세감면 혜택도 1986년 폐지됨

- ERISA형 ESOP: 차입형(leveraged) ESOP와 非차입형(nonleveraged) ESOP, 그리고 차입가능형 ESOP 등이 있음
- (차입 ESOP) 회사의 신용 또는 회사 내에 성립된 ESOP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취득
- (비차입 ESOP)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사주 취득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회사의 출연금으로만 자사주를 구입

< 차입 ESOP의 거래 구조 >



1. 은행은 회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ESOP에 자금을 대부해 줌
2. ESOP는 차입금으로 회사로부터 또는 (2A) 외부 주주로부터 주식을 구입함
3. 회사는 ESOP의 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한 자금(세 감면 가능)을 출연함
4. 종업원들은 퇴직 내지 이직시 주식이나 현금을 받음

- (운영 이유) 세계상의

이점, 임금유연성 제고와 자금유입 등

- ESOP 거래시 기업, 종업원, 금융기관 모두에 대한 손비 인정과 공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음
- ESOP 성립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임금유연성이 높아짐. 또한 차입 ESOP의 경우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만큼 일정한 자금이 회사로 유입됨

- (주요 운영 내용) 각종 세제 혜택, ESOP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

- (세제 혜택) 회사 출연금의 손비 인정(또는 연금납입 간주), ESOP 보유 주식 배당금으로 차입금 변제시 소득공제로 인정,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
- (의결권 행사) 자신이 소유한 자사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종업

원이 포기한 의결권을 회사가 행사할 수 있음

- 한편 차입 ESOP의 경우 차입금 상환 이후에 의결권을 가짐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방안 논의

- (개선 방안 유형) 크게 1)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보완, 2) 우리사주제도를 포괄적으로 개선, 3) 우리사주조합과 ESOP의 혼합, 4) ESOP 제도의 도입·대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를 둘러싼 핵심 논쟁은 우리사주제의 양대 목적, 즉 경영 참여와 복지 증진 가운데 ‘경영 참여의 유도’를 제도상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임
- 노동계는 종업원들의 경영 참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제도의 취지를 근로자에 대한 복지적 성격으로 국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대표적주장들)학계,노동계,증권계의방안이있음³⁾

< 각 방안의 주요 항목 비교 >

구분	임웅기	증권금융	지원센터
우리사주제 존립 근거	확정출연형 기업연금의 일부로 도입	퇴직금제도와 별도로 도입	퇴직금제도와 별도로 도입
관련 법률	기업연금법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법률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법률
투자 대상	<일반퇴직신탁>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우리사주신탁> · 전액 자사주에만 투자	· 주로 자사주(50% 이상)에 투자 · 나머지 부분은 지정된 종목 중에서 선정	전액 우리사주에 투자
출연 재원	종업원 퇴직금	퇴직금과 별도로 기업, 종업원 또는 기업과 종업원 공동 출연	기업-종업원 출연, 차입 ESOP 방식
우리사주신탁의 성격	· 법인격 부여 ·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	· 법률 신탁 ·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는 수탁자를 통해 행사	· 법인격 부여 ·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 · 수탁자에 관리위임 가능
퇴직금 보장장치	· 있음 · 퇴직시 자사주 평가 가격이 법정 퇴직금 보다 하락시 그 차액을 기업이 부담	· 없음 · 법적 퇴직금과는 별도로 운영	무관
의결권 행사	수탁자가 행사		· 종업원주주들이 직접 행사 · 위임된 주식은 이사장이 행사

3) 임웅기 교수,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의 개선 방안」, 1999 .1, 한국증권금융,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998. 12,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종업원소유참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5

각계의 입장

- (정부) 종업원의 재산증식에 정책 목적을 두고 미국식 ESOP 제도의 도입·대체를 고려하는 입장임
- (노동계) 종업원의 재산 증식과 경영 참가를 분리시킨 전제 위에 ESOP를 도입·대체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임
 - 즉 현재의 우리사주제를 포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선진적인 기법인 차입-비차입 ESOP의 원리를 도입, 노·사 및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 아울러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명확히 제도 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경영계) 우리사주제도 전반에 대한 제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는 반면 종업원의 주식 소유, 경영 참여 확대는 일반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하는 입장
 - 즉 근본적으로 종업원지주제를 종업원의 재산 증식이 아닌 경영참가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임

시사점

- (노사정위원회 합의 토대) 노사정위원회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양대 목적을 균형되게 고려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함
 - 경영 참여 확대에만 주력하는 노동계와 복지적 성격으로만 국한하려는 정부/경영계 모두에 있어서 ESOP의 도입 이유와 효과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요구됨
- (긍정적 효과 극대화 모색) ESOP의 효과 분석 사례와 이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 자본조달 효과 및 대규모 증자 용이, 양보임금 유도, 노사간 협력 증진 등 ESOP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해야 함
- (ESOP의 결점 분석 병행) ESOP 도입시 기업 및 기존 주주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으로서 ESOP의 이점을 상쇄하는 결점들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할 것임
 - 非ESOP 주주의 의결권 손실 및 지분 희석 효과와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민주홍 연구위원 jhmin@hri.co.kr ☎ 3669-4015)